



제700호. 2018. 1. 24.(수)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도 보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선	기 관 의 장
결	

## 목 차

### 입법예고

제2018-6호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www.jeju.go.kr](http://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 시

제2018-15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 4  
 제2018-1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자진반납) 고시 ..... 4

### 공 고

제2018-121호 2018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 ..... 5  
 제2018-164호 2018년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 급식봉사 등 재료구입 지방보조사업 추진계획 공고 ..... 7  
 제2018-176호 지하시설물 측량업 신규 등록 공고 ..... 8  
 제2018-184호 2018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소관 분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9

회 람									
--------	--	--	--	--	--	--	--	--	--

## 공 고

제2018-199호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11
제2018-208호 「2018년 일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및 참여자 모집 공고	16
제2018-228호 제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지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 개최 공고	17
제2018-236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18
제2018-243호 2018년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및 참여자 모집 공고	19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사항 알림(제주특별자치도 학생상담자원 봉사자회)	20

## 제 주 시

제주시 고시 제2018-3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21
제주시 고시 제2018-34호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영평동 2669-3번지 일원)	21
제주시 공고 제2018-174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체납액 납부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2
제주시 공고 제2018-190호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 안내문 및 자진처리명령서 전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23
제주시 공고 제2018-191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24
제주시 공고 제2018-192호 보험미가입 일반여행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5
제주시 공고 제2018-193호 보험미가입 일반여행업체 2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6
제주시 공고 제2018-194호 소재지 변경등록위반 일반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8
제주시 공고 제2018-204호 어업면허처분 공고	29
제주시 공고 제2018-277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국내여행업) 행정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30
제주시 공고 제2018-279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국내·외여행업)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31

## 서귀포시

서귀포시 고시 제2018-19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32
서귀포시 공고 제2018-19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35
서귀포시 공고 제2018-19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38
서귀포시 공고 제2017-21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안)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39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8-6호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널리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제주제품 품질인증(JQ)제와 지역내 공동상표 간에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야기함에 따라, 조례명을 포함하여 제주제품 인증과 관련된 사항으로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가. 품질인증, 농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인증의 표시 등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나. 품질인증 대상품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인증신청, 인증 유효기간, 인증의 표시,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바. 인증제품의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사. 품질인증 위탁기관 지정 및 위탁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8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문연로 30,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정책과
    - 전화 및 전송 : 064-710-2517 , FAX 064-710-2549
    - E-mail : khj3933@korea.kr
  -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18. 1. 19 . ~ 2. 8.
- 개최주소: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8-15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7-110(2017.4.10.)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된 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2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같음)

2. 보전산지 지정해제 내역

일련 번호	변경 유형	소재지				면적(㎡)			해제사유	도엽명 및 도엽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적	기지정	해제대상		
1	7-1-2 <공익용→준보전 (주거지역)>	서귀포	성산	성산	399-116	2,049	2,049	1,814	주거지역 편입	NI52-9-18-078^성산078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3. 열람장소

보전산지해제 표시 관계 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보전산지해제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8-1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자진반납)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3조, 「주택법」 제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3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행정처분내용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비고
제주-주택 2016-0087	(주)코아베스트 (백경화)	제주시 청사로 20, 4층	등록말소	사업자등록증 자진반납 (2018.1.19.)	
제주-주택 2016-0103	(주)제이이피 (이진숙)	서귀포시 태평로120번길 20	등록말소	사업자등록증 자진반납 (2018.1.22)	
제주-주택 2017-0041	그린빌 (김성구)	제주시 서광로 235-1	등록말소	사업자등록증 자진반납 (2018.1.22)	

2. 처분일자 : 2018. 1. 23.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8-121호

**2018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거 2018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10.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포함)
- 공모기간 : 2018. 1. 10 ~ 1. 29일
- 사업기간 : 2018. 2월 ~ 12월
- 사 업 비 : 110백만원
  - 각 사업별 예산범위 내 지원
  - 사업의 파급효과 및 필요성,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체별로 2개 이상 사업에 대해 지원 가능
- 사업내용
  -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30백만원
  - 사회적기업 업종별위원회 경쟁력 강화 사업 30백만원
  - 협동조합 설립지원 및 컨설팅 사업 20백만원
  - 사회적경제 프로그램 지원 사업 30백만원

2. 접수기간 : 2018. 1. 10(수) 09:00 ~ 1. 29(월) 18:00

3. 자격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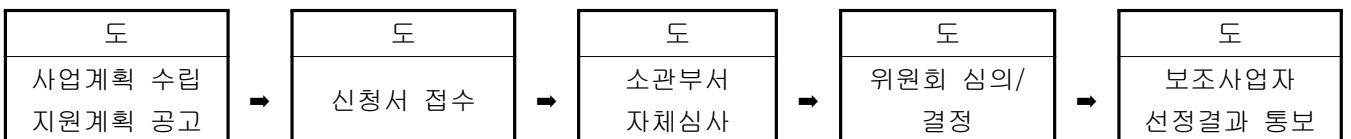
-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포함)
- 회계·노무·법무 등 분야별 경영지원 역량이 있고,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담 인력을 갖춘 단체(법인)
-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행정능력을 갖춘 실무 인력을 보유하여야 함  
\* 4대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등으로 소속 직원 입증 필요

4. 사업내용

연번	사업명	지원한도	지원내용	사업추진기간
1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30백만원 (100% 보조, 자부담 없음)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 관련 설명회 개최 <input type="checkbox"/>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인증요건 상담 등 컨설팅 지원 사업	'18. 2~12월
2	사회적기업 업종별위원회 경쟁력 강화사업	30백만원 (100% 보조, 자부담 없음)	<input type="checkbox"/> 네트워크 강화 및 업종별 공동사업 추진 <input type="checkbox"/> (예비)사회적기업 간 상호교류 프로그램 마련	'18. 2~12월
3	협동조합 설립지원 및 컨설팅	20백만원 (100% 보조, 자부담 없음)	<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신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18. 2~12월
4	사회적경제 프로그램 지원사업	30백만원 (100% 보조, 자부담 없음)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및 포럼 추진	'18. 2~12월

5. 선정절차 및 심사

- 선정절차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사업수행 능력, 기관일반 능력 등

6. 신청서류

- ①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②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록증, 단체신고서 등)
- ③ 단체(법인)소개서
- ④ 사업계획서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⑥ 4대보험 가입자 명부(전년도 말 기준)
- ⑦ 기타 예산 등 사업신청 내용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견적서 등 첨부)

7. 신청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시 정확한 예산 산출내역과 근거를 제시(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한국물가협회(<http://www.kprc.or.kr>)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 필요시 신청단체(법인)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보조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단체(법인)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음

8.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 소인 유효분에 한함)

-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경제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담당  
(6312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 경제일자리정책과)

9. 선정결과 통지 : 2018. 2월 중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게재

10.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담당(☎064-710-2553)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8-164호

**2018년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 급식봉사 등 재료구입  
지방보조사업 추진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2018년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 사업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5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업개요

	사업명	지원규모	사업추진 기간	접수·문의처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 급식봉사 등 재료구입	9,800천원 (보조율 100%)	‘18. 2월~12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710-4204

※ 우리도의 예산집행 방침 등에 따라 지원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4장 제19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단체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 1. 15.(월) ~ 2018. 1. 26.(금)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2018. 1. 26.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 가)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 나) 사업계획서 1부(지원사업 요약서 첨부)
  - 다) 단체(법인) 소개서 1부
- 신청서식 : 붙임 1~3 참조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심 사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8-176호

지하시설물 측량업 신규 등록 공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하시설물 측량업을 신규 등록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8. 01. 16.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다 음

업 종	지하시설물 측량업
등록번호	11 - 000431
상 호	주식회사 디엠글로벌
대 표 자	주상현
등록일자	2018. 01. 16.
소 재 지	제주시 기와4길 11, 2층(영평동)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8-184호

2018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소관 분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신청자격

- 각 사업별 신청자격 확인 후 신청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 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고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2. 지원 대상 사업

연번	사업명	지원규모	추진 기간	접수·문의처
1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124,000천원	3월 ~ 12월	생물권지질공원연구과 (064-710-6981)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생태관광 관련 비영리 협회 등			
사업목적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및 생태관광마을(저지리, 하례1·2리) 활성화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			
사업개요	- 기간: '18. 3. ~ 12. - 장소: 생태관광마을(저지리, 하례1.2리) 일원			
사업내용	-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관광마을(저지리, 하례1·2리) 프로그램 운영 - 주민교육 및 협의체 운영, 홍보 등			
선정기준	- 사업수행 능력 단체 능력도(전문성, 실적 등)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합성(프로그램 다양성, 독창성 등) - 예산편성의 적절성, 사업추진 파급효과 등			

연번	사업명	지원규모	추진 기간	접수·문의처
2	생물권보전지역 생태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	4,800천원	3월 ~ 12월	생물권지질공원연구과 (064-710-6981)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도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환경체험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사업목적	생물권보전지역내 체험활동을 통한 생물다양성 보존 인식 강화 및 이해			
사업개요	- 기간: '18. 3. ~ 12. - 장소: 도 일원			
사업내용	- 생물권보전지역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선정기준	- 사업수행 능력 단체 능력도(전문성, 실적 등)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합성 - 예산편성의 적절성, 사업추진 파급효과 등			
3	지질공원 대표명소 국제트레일	200,000천원	4월 ~ 10월	생물권지질공원연구과 (064-710-3945)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사업목적	관광객과 도민이 함께하는 제주 세계지질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 및 축제의 장을 마련해 제주 세계 지질공원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개요	- 기간: '18. 4. ~ 10. - 장소: 수월봉 및 산방산·용머리 일원 (기간을 달리하여 각각 개최)			
사업내용	- 지질공원 탐방 프로그램 운영 - 체험 및 교육·학술 프로그램(관광객, 도민, 전문가, 마을 참여 프로그램) 운영 -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및 국내외 홍보, 외국인 초청 등			
선정기준	- 사업수행 능력 단체 능력도(전문성, 실적 등)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합성 - 예산편성의 적절성, 사업추진 파급효과 등			
4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오스쿨 운영	12,000천원	3월 ~ 12월	생물권지질공원연구과 (064-710-3945)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도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사업목적	지질공원 대표명소 마을에 위치한 학교 대상 학생교육			
사업개요	- 기간: '18. 3. ~ 12. - 장소: 지질공원 대표명소 일원 학교			
사업내용	- 대표명소 소개 학교 방문 지질공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표명소 현장학습 운영			
선정기준	- 사업수행 능력 단체 능력도(전문성, 실적 등)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합성 - 예산편성의 적절성, 사업추진 파급효과 등			

연번	사업명	지원규모	추진 기간	접수·문의처
5	한라산-백두산 탐사지원사업	50,000천원	6월 ~ 12월	생물권지질공원연구과 (064-710-6576)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사업목적	유네스코 인정 세계적인 생태·환경의 보고인 한라산-백두산 탐사를 통해 생태·환경 보존을 위한 토대 마련			
사업개요	- 기간: '18. 6. ~ 12. - 장소: 한라산, 백두산 일원			
사업내용	- 한라산과 백두산의 생태환경분야 탐사			
선정기준	- 사업수행 능력 단체 능력도(전문성, 실적 등)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합성(프로그램 다양성, 독창성 등) - 예산편성의 적절성, 사업추진 파급효과 등			

3. 신청 및 접수

- 가. 신청기간: 2018. 1. 17. ~ 2018. 1. 31. (근무시간 내)
- 나.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신청(우편접수는 근무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다. 접수장소: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 우편접수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목원길 72(연동),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 라. 신청서류: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단체 또는 법인 등록증, 사업계획서 각 1부
- 마. 문의처: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 064)710-6981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심사기준: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 통보: 선정단체에 개별 통보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8-199호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매연 발생량이 많은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제주특별자치도의 대기질 향상을 위해 대상 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19.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접수기간: 2018. 1. 22. (월) ~ 3. 2. (금)

기본 요건 충족자 중 차량등록증상 최초등록일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 선정

□ 접수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①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검사)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철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④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⑤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⑥ 2005. 12.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자동차
- ⑦ 폐차시 “일반폐차”가 가능한 차량(압류건수 0건)

□ 지원 금액(사업물량 1,000대, 총 예산 1,608,000천 원)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과 지원율을 곱한 금액에서 아래의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천 원)

구 분	‘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01년 1월 1일부터 ‘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단위: 천 원)	
	상한액	지원율	지원액 (상한액)	지원율
3.5톤 미만	없음	100%	10~1,650 (1,650)	100%
3.5톤 이상 6,000cc 이하			10~4,400 (4,400)	
3.5톤 이상 6,000cc 초과			10~7,700 (7,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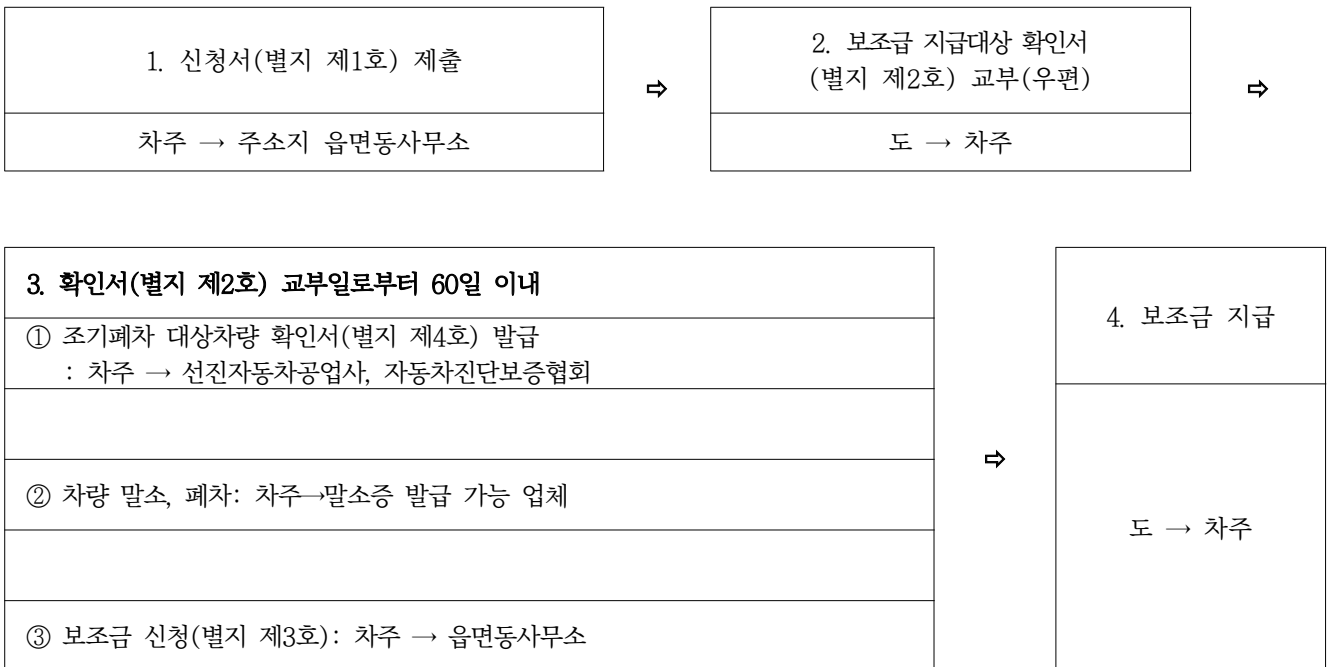
□ 생계형 차량\*인 경우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원율을 10% 추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소유차량
- ※ 신청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로 조기폐차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

사안별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 차량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인정
  - ※ 지입차량 소유자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함

□ 지원절차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작성·제출

- 별지 제1호 신청서에 신청인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별첨)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 ☞ 대리 신청시: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을 함께 첨부
  - ☞ 법인 신청시: 법인등록증\*을 함께 첨부
    - \* 법인등록증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 등록증의 구석에 적어 제출
  - ※ 차량 여러 대 소유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 단체 당 연 1대만 지원 가능
  - ※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예정자는 전기자동차과(710-2612~3)의 추가보조금과 이중지원이 불가하므로 선택 신청
  - ※ 생계형차량 보조금을 추가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조기폐차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것에 한해 인정

2. 대상자 확정: 2018. 3. 30. (금)

☞ 확정 이후,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별지 제2호, 이하 “지급확인서”)를 우편으로 교부

3. 확인서(별지 제2호) 교부일로부터 60일 이내

3-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차량 확인서(별지 제4호) 발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가능 판정 차량의 소유자는 지급확인서 교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서상 “정상” 발급 후 폐차·말소하여야 함

3-나. 보조금 청구

지급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등은 지급확인서 교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3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제3호 서식 - 민원인이 작성)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정상운행 가능차량 확인서)\*

(제4호 서식 - 선진자동차공업사, 자동차진단보증협회)

- 정상판정을 받아야 함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수수료: 30,000 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발급 가능업체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는 인정

3)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원본 또는 사본)

4) 폐차한 차량 차주의 통장사본

※ 조기폐차 보조금 포기시 지급확인서 발급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포기서 제출 (기한내 포기서 미제출시 당해연도 및 차기년도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FAX 710-6089)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 이 경우 위임장(별지 제 5호) 제출

※ 대리인 접수 또는 공동명의인 경우, 보조금 청구시 위임장(별지 제5호) 제출☞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가능)☞ 공동명의인 경우,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았으나 보조금 청구 제외 대상

. 수출 및 진출, 이전차량

. 말소등록증상 “차령 초과말소 차량”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 전 폐차한 차량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이 아닌 차량

□ 제주지역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정상운행 여부) 발급 지정업체 현황

연번	업 소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1	선진자동차공업사	제주시 연삼로 809 (화북이동)	755-8831
2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제주사무소	제주시 일주동로 146 (화북일동)	757-7362

□ 제주지역 폐차장 현황

연번	업 소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1	광주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화남로 26(화북일동)	755-1586
2	한라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청풍남4길 34(화북일동)	722-8082
3	(주)제주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선반로14길 26(화북일동)	755-8833
4	전국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조천읍 종인내길 285	726-4444
5	(주)대경산업	선반로6길 21(화북일동)	755-8803
6	하나로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선반로14길 11(화북이동)	722-8333
7	제주화북폐차장	선반로2길 5-4(화북일동)	724-8272
8	영남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조천읍 종인내길 281	721-3070
9	탐라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한림읍 한림로 554	796-5114
10	제주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토평공단로 127번길 36(토평동)	732-4577
11	서귀포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토평공단로 115번길 23(토평동)	732-4972
12	서귀종합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토평공단로 129(토평동)	733-8933
13	안전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대정읍 영락사독로 90번길 41	792-4500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8-208호

「2018년 일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및 참여자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2018년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18.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 사업비 : 32억 \*전년도부터 계속 참여근로자 지원 금액 포함
- 지원인원 : 300명 내외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및 만 15세 ~ 39세 이하 청년근로자  
\*자세한 자격 기준은 운영지침에 따름
- 지원내용 : 미취업청년 신규채용 기업에 2년간 1인당 월 50~70만원 지원

2. 참여 신청 접수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매월 1일 ~ 15일(예산소진시 까지)  
\* 2018년도는 2.1일부터 신청 접수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정책과(☎064-710-254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 경제일자리정책과)

- 구비서류 : 운영 지침에 의함

3. 선정결과 : 자격조회 및 서류 심사 후 선정하여 개별 통보

4. 지원금 신청 접수 및 지급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분기별(3, 6, 9, 12월) 1일 ~ 15일
  - 신청방법 : FAX(☎064-710-2549), 직접방문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정책과

- 지원금 지급 : 분기별(3, 6, 9, 12월) 지급

5. 참여기업 주요 준수사항

- 지원기간 중 감원방지 노력
  - 사업참여기업은 이 사업의 지원금 지원기간 중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정리하고 하는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경우 감원일로부터 1년간 참여 신청 제한



□ 참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 주 40시간 주5일이 기본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간근무수당 명목으로 1.5배 할증한 금액을 지급해야 함
- 1년차 근로자에게 월마다 1일, 2년 초과시 연간 15일 이상 연차 휴가지급,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 지급해야 함

□ 위 기재되지 않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도 준수하여야 함

6. 기타

- 참여 신청서의 모든 제출 서류는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될 뿐만 아니라, 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또한, 제출 되어진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 및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2018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운영지침」에 의합니다.

7. 문의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정책(064-710-254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8-228호

제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지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 개최 공고

제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에 따라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19.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개최목적

제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관계전문가 등 의견 수렴

2. 공청회 개요

가. 일 시 : 2018. 2. 5.(월) 15:00~17:00

나. 장 소 : 일도2동 주민센터

다. 주요내용 : 도시재생 뉴딜사업(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구상안 발표, 토론 및 의견수렴 등

3. 제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개요

○ 사 업 명 : 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 사업위치 : 제주시 일도2동 1029-156번지 일원

- 사업면적 : 약45,616㎡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3년간)
- 총사업비 : 83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33억원)
- 세부사업
  - 가. 주거환경 재생
    - 자율주택 정비사업, 주택정비 지원사업, 공유지 복합공공시설 및 임대주택사업
  - 나. 생활환경 재생
    -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안전환경 개선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놀이터 및 공동텃밭 조성
  - 다. 사회경제적 재생
    - 공동체거점 조성사업, 공동체 프로그램 계획

4. 기타사항

- 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서면 또는 FAX(064-728-3549)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과(☎064-710-2753) 또는 제주시청 도시재생과(☎064-728-35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8-236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 1. 24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업체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정보통신공사업 (제640125호)	주식회사 진우엔에스	이영숙	제주시 복지로 5길 21, 1층(도남동)	2018.1.22

“끝”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8-243호

2018년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및 참여자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2018년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23.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 사업비 : 5억원
- 지원인원 : 150명 내외
- 지원대상
  - 기업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장을 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4대 보험가입 사업장
  - 근로자 : 만 15세 ~ 39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로, 월급여가 190만원 이상인 자
- \*자세한 자격 기준은 운영지침에 따름
- 지원내용 : 참여기업이 직원숙소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한 경우 또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택임차료를 지원한 경우 월 숙소·주택 임차료(보조금)의 80%(근로자 1인당 최대 월30만원) 지원(\*분기별로 참여기업에 지원)

2. 참여 신청 접수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매월 1일 ~ 15일(예산소진시 까지)
  - \* 2018년도는 2.1일부터 신청 접수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정책과(☎064-710-254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 경제일자리정책과)
- 구비서류 : 운영 지침에 의함

3. 선정결과 : 자격조회 및 서류 심사 후 선정하여 개별 통보

4. 지원금 신청 접수 및 지급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분기별(3, 6, 9, 12월) 1일 ~ 15일
  - 신청방법 : 직접방문(최초 신청시), 2회 이후 팩스, 이메일 신청가능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정책과
- 지원금 지급 : 분기별(3, 6, 9, 12월) 지급

5. 참여기업 주요 준수사항

- 근로관계 법령 등의 준수
  - 사업참여기업 및 사업참여 근로자는 근로계약 등 근로관계법령 및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단체협약·취업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며, 보금자리 지원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지원기간 중 감원방지 노력
  - 사업참여기업은 본 사업의 지원금 지원기간 중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사업참여근로자 포함)를 정리하고 하는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경우 감원일로부터 1년간 참여 신청 제한
- 위 기재되지 않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도 준수하여야 함

6. 기 타

- 참여 신청서의 모든 제출 서류는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될 뿐만 아니라, 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또한, 제출 되어진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 및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2018년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합니다.

7. 문의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정책과(☎064-710-254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사항 알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8. 1. 23.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변경등록 년월일	주된사업
361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상담자원 봉사자회	제주시 문연로 5	오영주	'18. 1.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을 위한 교육사업</li> <li>○ 각종 연수 및 세미나 개최 교육사업</li> <li>○ 상담 관련 홍보활동 및 사례발표회 개최사업 등</li> </ul>
◇ 변경내용 • 대표자 변경 - 당 초 : 대표자 : 오 경 희 - 변 경 : 대표자 : 오 영 주					

끝.

제주시 고시 제2018-3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 처리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 24.

제 주 시 장

□ 하천 점용 허가 내용

허가 번호	허가 년월일	점용 목적	하천명	점용위치	점용 면적	점용 기간	피허가자	비고
2018-2	2018. 1. 24.	상수관로 (D350)	이호천	노형동 3765번지	35㎡	2018.1.24. ~ 2023.1.23.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제주시 고시 제2018-34호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

하수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01. 23.

제 주 시 장

□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시 행 자	법 인 명	
	대 표 자	채경자
	등록번호	
	주 소	제주시 영강길 ***번지
시 행 목 적	아래 토지 일원에 건축물 등 신축에 따른 발생오수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처리하기 위한 오수관로 신설	
시 행 지 역	영평동 2669-3번지 일원	
공공하수도 규모	· 오수관(PE관 D300mm) : L=18m · 오수맨홀(D900mm) : 1개소	
공 사 기 간	2018. 01. ~ 2018. 0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상하수도과(TEL 064-728-7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제주시 공고 제2018-17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에 의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15일

제 주 시 장

1. 공고명칭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체납액 납부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1.15. ~ 2018. 1.30 (15일간)
3. 근거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3조

4. 대상자 및 공시송달 내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처분원인	처분내용	
박*용	60.01.20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꽃티2길 17	금연구역 흡연위반 - 시간 : 2017.9.20. 18:14 - 장소 : 세이프 pc방	과태료	103,000
오*주	70.08.01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5705-3	금연구역 흡연위반 - 시간 : 2017.9.25. 20:32 - 장소 : 한마음병원	과태료	103,000

의견 제출처	기관명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자	김다혜
	주소	제주시 연삼로 264	전화번호	(064)728-4034
	전자우편	dhrltnr0903@korea.kr	전송	(064)728-4079
제출기한		2018년 1월 30일 18:00까지		

5. 유의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제주시 공고 제2018-19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우리시 도로 및 주택가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 소유자에게 사전처리안내문 및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칭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 안내문 및 자진처리명령서 전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1. 16 ~ 2018. 1. 31 (15일)
3. 송달대상 : 별첨 11대(붙임참조)
4. 송달내용
  - 위 차량의 소유자(점유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자동차를 폐차 또는 자진처리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 내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매각) 하게 되으며,
  - 아울러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거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같은법 제81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고발 되면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시 교통행정과(☎064-728-3195)로 연락바랍니다.

2018년 1월 16일

제 주 시 장

제주시 공고 제2018-191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우리시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주민불편 및 교통소통장애, 도시미관 저해로 강제견인 보관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진처리하도록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바, 동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함을 공고하오니 대상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는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18. 1. 16 ~ 2018. 2. 15
2. 강제처리일시 : 2018. 2. 15일 이후
3. 강제처리장소 : 제주시 화북동 소재 폐차장
4. 강제처리방법 : 폐차
5. 강제처리(폐차)대상차량 : 11대(붙임 참조)
6.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위 공고 기간 내에 자진처리(이동 및 폐차)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을 강제처리(직권말소)한 후 자동차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말소 등록하고, 차량 소유자(점유자)는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한 자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시 범칙금(20~30만원)이 부과되고, 자진처리 미이행시 강제처리(폐차) 후 미이행에 대한 범칙금(100~150만원)을 부과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압류, 저당권자는 공고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다. 소유자(점유자)는 위 기간내 차량내부물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처분)됨을 알려 드립니다.

(※자동차저당법 - 저당권자는 공고(시작)일로부터 1월 이내 권리행사)

라.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시에서는 일체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교통행정과(☎064-728-3195)로 문의 바랍니다.

2018년 1월 16일

제 주 시 장



제주시 공고 제2018-192호

**보험미가입 일반여행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사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일반여행업	355	성림관광	유림	제주시 연동4길 6-3, 2층(연동)

-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1개월)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일반여행업	2016-12	(주)장성	김야고부	제주시 인다1길 58-1, 1층(아라일동)

- 3차 행정처분(사업정지2개월)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일반여행업	72	(주)골프인제주	박정환	제주시 연북로 8, 1004호(노형동, 에이스텔)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제1항 위반(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미예치)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정명령(성림관광), 사업정지1개월((주)장성) 및 사업정지 2개월((주)골프인제주)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사. 법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35조 제1항 제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

5.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가. 공고기간 : 2018. 1. 17. ~ 1. 31.(15일간)

나.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제주시청)

- 연락처 : 064)728-2783, 팩스 : 064)728-2759

다. 의견제출기한 : 2018. 1. 31까지

6.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7.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관광진흥과(064-728-2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1. 16.

제 주 시 장

제주시 공고 제2018-193호

**보험미가입 일반여행업체 2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사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의견 제출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처분의 제목 :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1개월)

2. 당 사 자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일반여행업	342	(주)이지타이거 인터네셔널	우건국	제주시 연북로 12, 1104호(노형동, 이레하이텔)
	2016-13	(주)베이스투어	오지용	제주시 평전길 28-1, 203호(삼도일동, 레미안빌2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제1항 위반(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미예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사업정지1개월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사. 법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35조 제1항 제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

6.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가. 공고기간 : 2018. 1. 17. ~ 1. 31.(15일간)

나.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제주시청)

- 연락처 : 064)728-2783, 팩스 : 064)728-2759

다. 의견제출기한 : 2018. 1. 31까지

7.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8.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관광진흥과(064-728-2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1. 16.

제 주 시 장

제주시 공고 제2018-194호

**소재지 변경등록위반 일반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 개별기준 가목의 2)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행정처분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당 사 자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일반여행업	9	(유)대명해외관광	허성수	제주시 고마로 110, 101동 803호(일도이동, 영도제나빌)
	276	(주)에스티앤지	박홍수	제주시 연동14길 3, 402호(연동)
	342	(주)이지타이거인터네셔널투어	우건국	제주시 연북로 12, 1104호(노형동, 이레하이텔)
	72	(주)골프인제주	박정환	제주시 연북로 8, 1004호(노형동, 에이스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7항 위반(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정명령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2)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35조 제1항 제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6. 공고기간 : 2018. 01. 17~ 2018. 01. 31.(15일간)

7.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8.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관광진흥과(064-728-2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1. 16.

제 주 시 장

제주시 공고 제2018-204호

**어업면허처분 공고**

수산업법 제8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17.

제 주 시 장

다 음

◎ 어업면허 처분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의방법	어업면허유효기간	어장의위치와구역	어업시기	포획물의종류	처분내용	처분연월일	어업권자	
									주소	성명
제주시 제0008호	마을어업	나장도수	2018.3.12.~2028.3.11.	산지(삼도동)지선(38.3ha)	연중	패류, 해조류, 정착성수산동물	어업면허처분	'17.1.16	제주시 탐동해안로 46	산지어촌계

제주시 공고 제2018-277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국내여행업) 행정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7조(변경등록)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국내여행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처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처 분 명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당 사 자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의견제출기한	반송사유
2014-34	복지관광(주)	임채훈	제주시 삼무로 62, 4층 3호(연동)	변경등록위반	18.2.8.	폐문부재 등
2016-66	업블랑 제주투어	김혜연	제주시 중앙로13길 34-10, 201호(일도일동)	변경등록위반	18.2.8.	폐문부재 등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7조(변경등록) 위반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5. 공고 기간 및 의견제출처

가. 2018. 1. 23. ~ 2018. 2. 8.(17일간)

나.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제주시청)

- 연락처 : 064-728-2784, 팩스 : 064-728-2759

6.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7.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과(064-728-27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1. 23.

제 주 시 장

제주시 공고 제2018-279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국내·외여행업)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15조제1항(보험의 가입 등)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국내·외여행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처분사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당 사 자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사전통지일	반송사유
2013-27 (국내)	(주)금원인터넷서널	정수옥	제주시 과원북4길 99, 601호 (연동, 일영파크빌)	18.1.4.	폐문부재
220 (국외)	(주)금원인터넷서널	정수옥	제주시 과원북4길 99, 601호 (연동, 일영파크빌)	18.1.4.	폐문부재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관광진흥조례 제15조 위반(보험미가입)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사.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5.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가. 2018. 1. 23. ~ 2018. 2. 8.(17일간)

나.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제주시청)

- 연락처 : 064-728-2784, 팩스 : 064-728-2759

- 제출기한 : 2018. 2. 8.(목)까지

6.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7.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과(064-728-27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1. 23.

제 주 시 장

서귀포시 고시 제2018-19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SK핀크스 골프클럽 개발사업(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4일

서 귀 포 시 장

1. 결정(변경) 취지

- 진입로 진·출입 각각부 확장
-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별첨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게재생략)
- 4. 열람장소 : 서귀포시 도시과(☎760-2973)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별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SK 핀크스 골프장	관광 휴양	서귀 안덕 상천 산62번지 일원	1,244,848		1,244,848	1998.11.7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 도 로

도로총괄표

유형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4	707	5,962 5,985	-	-	-	-	-	-	4	707	5,962 5,985
소로	4	707	5,962 5,985	-	-	-	-	-	-	4	707	5,962 5,985



□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	7	국지 도로	319	산록도로 (산62-1도)	클럽하우스입구 (산62-3체)	진입도로	1998.11. 7	회원제
기정	소로	3	2	7	국지 도로	151	산록도로 (산62-1도)	소로 3-1 (산62-3체)	진입도로	1998.11. 7	회원제
기정	소로	3	3	7	국지 도로	112	소로 3-1 (산62-3체)	호텔 입구 (산62-3체)	내부도로	1998.11. 7	회원제
기정	소로	3	4	7	국지 도로	125	산록도로 (545-4도)	클럽하우스입구 (545-5체)	진입도로	1998.11. 7	대중제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사용형태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1	진입도로	진입도로 진,출입 각각부 확장 5,962㎡→5,985㎡(증23㎡)	진입도로 시점 각각부분을 확장 골프 내장객 들의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진,출 입로를 확보하고자 함.

(2) 주차장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1	주차장	상천리 산62-3번지일원	6,690	-	6,690	1998.11. 7	회원제
기정	1-2	주차장	상천리 산62-3번지일원	434	-	434	1998.11. 7	회원제 (숙박시설)
기정	1-3	주차장	상천리 545-5번지일원	4,148	-	4,148	1998.11. 7	대중제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 녹지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원형녹지	서귀 안덕 상천 산62-3번지일원	194,065.63	-	194,065. 63	1998.11.7	회원제
			서귀 안덕 상천 산62번지 일원	84,310		84,310	1998.11.7	대중제

다. 방재시설(변경없음)

유수지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1	유수지	저류지1	상천리 545-5번지일원	3,635		3,635	1998.11.7	대중제
기정	3-2	유수지	저류지2	상천리 산62번지일원	7,020		7,020	1998.11.7	대중제
기정	3-3	유수지	저류지3	상천리 502번지일원	8,099	-	8,099	1998.11.7	회원제
기정	3-4	유수지	저류지4	상천리 385번지일원	5,519	-	5,519	1998.11.7	회원제
기정	3-5	유수지	저류지5	상천리 390번지일원	2,311	-	2,311	1998.11.7	회원제
기정	3-6	유수지	저류지6	상천리 602-1번지일원	1,594	-	1,594	1998.11.7	회원제

라. 수도공급시설(변경없음)

수도공급시설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1	지하수관정1	취수시설	상천리 산62-3번지일원	9	-	9	1998.11.7	대중제
기정	4-2	지하수관정2	취수시설	상천리 산62-3번지일원	9	-	9	1998.11.7	대중제
기정	4-3	지하수관정3	취수시설	상천리 500번지일원	9	-	9	1998.11.7	회원제
기정	4-4	지하수관정4	취수시설	상천리 산62번지일원	9	-	9	1998.11.7	회원제
기정	4-5	지하수관정5	취수시설	상천리 542번지일원	9	-	9	1998.11.7	회원제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운동, 숙박시설용지(변경 없음)

구분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BL1	874,521	1	서귀 안덕 상천 산62-3번지 일원	874,521	운동, 숙박시설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유수지, 수도시설)
	BL2	370,327	2	서귀 안덕 상천 산62번지 일원	370,327	운동시설,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유수지, 수도시설)
	합계	1,244,848			1,244,848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운동, 숙박시설용지(변경 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BL1	상천리 산62-3번지일원	용도	운동,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건폐율	2% 이하
			용적률	3% 이하
			높 이	3층(12m)이하
	BL2	상천리 산62번지일원	용도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건폐율	2% 이하
용적률			3% 이하	
			높 이	3층(12m)이하

서귀포시 공고 제2018-19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1항, 동법 제9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 다 음 -

1.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사업의 종류	사 업 명	사업의 규모	착수 및 준공 예정일	비 고
도시계획 시설(도로)사업	서홍도시계획도로 (소로1-4호선)개설사업	도로연장 : 106m 도로 폭 : 10m	실시계획인가일 ~ 2018. 12. 31	
도시계획 시설(도로)사업	서홍도시계획도로 (소로2-4호선)개설사업	도로연장 : 138m 도로 폭 : 8m	실시계획인가일 ~ 2018. 12. 31	
도시계획 시설(도로)사업	동상효도시계획도로 (소로2-1호선)개설사업	도로연장 : 163km 도로 폭 : 8m	실시계획인가일 ~ 2019. 12. 31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귀포시장, 서귀포시 중앙로 105(서홍동)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계획평면도 : 열람장소 비치

4. 열람기간 : 2018. 1. 22. ~ 2017. 2. 6.(15일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열람장소 비치

6.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장소 : 서귀포시청 도시과 ☎ 064-760-2983, fax 064-760-2979】

7. 토지 및 물건조서

○ 사업명 : 서홍도시계획도로 (소로1-4호선) 개설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지적 (㎡)	분할 지번	지목	편입 면적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리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서홍동	1600-1	646	1600-	전	308	㎡	제주특별자치도					
2	서홍동	1598-3	1,182	1598-4	과	870	㎡	제주특별자치도					
3	서홍동	1599	3,165	1599-4	전	3	㎡	이현정	제주시 노연로 15, 901호(노형동, 일호지오빌)				지분 9/10
								황유빈	제주시 노연로 15, 901호(노형동, 일호지오빌)				지분 1/10
4	서홍동	1599	3,165	1599-5	전	4	㎡	이현정	제주시 노연로 15, 901호(노형동, 일호지오빌)				지분 9/10
								황유빈	제주시 노연로 15, 901호(노형동, 일호지오빌)				지분 1/10

○ 사업명 : 서홍도시계획도로 (소로2-4호선) 개설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지적 (㎡)	분할 지번	지목	편입 면적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리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서홍동	276-4	329	276-5	과	228	㎡	주식회사 상원디엔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서호로 79 시-2(호근동, 서강네스빌2차)				
2	서홍동	1603-2	216	1603-5	대	101	㎡	제주특별자치도					
3	서홍동	1603-1	770	1603-6	과	44	㎡	제주특별자치도					
4	서홍동	1602-4	635	1602-	과	231	㎡	제주특별자치도					
5	서홍동	1604-1	1,488	1604-2	과	735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명 : 동상호 도시계획도로 (소로2-1호선) 개설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지적 (㎡)	분할 지번	지목	편입 면적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리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상호동	303-7	57	303-10	전	32	㎡	제주특별자치도					
2	상호동	303-6	422	303-8	전	206	㎡	제주특별자치도					
3	상호동	304	1,507	304-1	전	73	㎡	제주특별자치도					
4	상호동	314	1,488	314-1	전	112	㎡	제주특별자치도					
5	상호동	314	1,488	314-2	전	20	㎡	제주특별자치도					
6	상호동	313	268	313-1	대	88	㎡	제주특별자치도					
7	상호동	312	1,160	312-1	전	169	㎡	제주특별자치도					
8	상호동	301-3	509	301-7	대	1	㎡	제주특별자치도					
9	상호동	302-1	426	302-4	전	54	㎡	제주특별자치도					
10	상호동	306	1,002	306-1	과	135	㎡	제주특별자치도					
11	상호동	432	549	432-1	과	261	㎡	제주특별자치도					
12	상호동	433	407	433-1	과	46	㎡	제주특별자치도					
13	상호동	431-1	442	431-2	과	33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공고 제2018-19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법환~혁신도시 간(대로3-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1항, 동법 제9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보상대상 토지 등을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다 음

1.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사업의 종류	사업명	사업의 규모	위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비고
도시계획 시설(도로)사업	법환~혁신도시 간 (대로3-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도로연장 : 750m 도로 폭 : 25m	법환동 561-6 ~ 법환동 713-6	2018. 1. 24 ~ 2019. 12. 31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귀포시장, 서귀포시 중앙로 105(서흥동)

3. 열람기간 : 2018. 1. 24. ~ 2018. 2. 8.(15일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 : 토지·물건조서 참조 및 열람장소에 비치

5. 보상방법

가. 보상의 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나. 보상방법 : 개인별 현금보상(계좌입금)

다. 보상시기 : 2018. 1. 24. ~ 2018. 5. 30.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 보상협의요청 → 협의 (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불성립의 경우 : 수용재결 → 공탁 → 소유권이전

마. 보상액 산정 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3인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 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위 같은법 제6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귀포시청 도시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기타사항

- 가.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물건별 보상금액 및 구비 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 나. 열람결과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 등이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상기 열람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7. 열람장소 및 이의신청 장소

- 서귀포시청 도시과 【☎ 064-760-2982, fax 064-760-2979】

서귀포시 공고 제2017-21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안)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남원 도시계획도로(소로1-3, 2-9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1항, 동법 제9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보상대상 토지 등을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 다 음 -

1.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계획에 관한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사업명	사업의 규모	착수 및 준공 예정일	비고
도시계획 시설(도로)사업	남원도시계획도로 (소로1-3호선)개설사업	도로연장 : 150m 도로 폭 : 10m	실시계획인가일 ~ 2018. 12. 31	
도시계획 시설(도로)사업	남원도시계획도로 (소로2-9호선)개설사업	도로연장 : 110m 도로 폭 : 8m	실시계획인가일 ~ 2018. 12. 31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귀포시장, 서귀포시 중앙로 105(서흥동)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계획평면도 : 열람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 2018. 1. 24. ~ 2018. 2. 8.(15일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 : 토지·물건조서 참조 및 열람장소에 비치
6. 보상방법
  - 가. 보상의 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 나. 보상방법 : 개인별 현금보상(계좌입금)
  -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 보상협의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 협의불성립의 경우 : 수용재결 → 공탁 → 소유권이전
  - 라. 보상액 산정 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3인(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 협의를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 위 같은법 제6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귀포시청 도시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 가.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물건별 보상금액 및 구비 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 나. 열람결과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 등이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상기 열람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8. 열람장소 및 이의신청 장소
  - 서귀포시청 도시과 【☎ 064-760-2983, fax 064-760-2979】



- 토지 및 물건 조서

○ 사업명 : 남원 도시계획도로(소로1-3호선) 개설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대 장 (당초)	지장물내역		분할 면적및수 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대장 (당초)	분할 (편입)			종류	구조			이름	주소	이름	주소	권리의종류 및내용	
1	남원읍 남원리	167-5	167-5	과	184			184	㎡	제주특별자치도					
2	남원읍 남원리	168-2	168-5	과	1,355			319	㎡	제주특별자치도					
3	남원읍 남원리	171-1	171-6	학	16,411			57	㎡	제주도	소관청	교육감			
						참식나무	20년생	1	주						
						벗나무	20년생	1	주						
						장미	15년생	1	주						
						구름비나무	7년생	1	주						
						금식나무	15년생	1	주						
						천선과나무	25년생	1	주						
						덧나무	30년생	1	주						
						대나무	5년생	1	주						
4	남원읍 남원리	191-1	191-4	과	2,149			258	㎡	제주특별자치도					
6	남원읍 남원리	190-1	190-2	과	3,851			521	㎡	제주특별자치도					
7	남원읍 남원리	189-4	189-9	과	766			68	㎡	제주특별자치도					
8	남원읍 남원리	183-13	183-13	과	34			34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명 : 남원 도시계획도로(소로2-9호선) 개설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대 장 (당초)	지장물내역		분할 면적및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대장 (당초)	분할 (편입)			종류	구조			이름	주소	이름	주소	권리의종류 및내용	
1	남원읍 남원리	168-2	168-9	과				197	㎡	현남두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581번길 11-5				
						감귤나무	30년생	32	주						
2	남원읍 남원리	166	166-5	대				2	㎡	홍기철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7121-18				
						대문	목재	1	식						
						보안등		2	식						
3	남원읍 남원리	194-1	194-20	대				190	㎡						
						주택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55	㎡	양정옥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7121-16				지분 3/9
						저온저장고	조립식판넬	1	식	정완기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7121-16				지분 4/9
						창고	블럭함석	28	㎡	정완식	제주시 노연로 118-1 303호 (연동미도스카이빌)				지분 2/9
						창고내 동산이전비		1	식						
						보수비		1	식						
						동백나무	25년생	1	주						
4	남원읍 남원리	164	164-2	과				100	㎡						
						감귤나무	30년생	13	주						
						측백나무	40년생	7	주	방용준	대구 수성구 지범로 290 109동 1201호 (범물동우방미진하이츠)				
						사철나무	15년생	1	주						
						감나무	15년생	1	주						

도보 제700호 2018년 01월 24일(수요일)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대 장 (당초)	지장물내역		분할 면적및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대장 (당초)	분할 (편입)			종류	구조			이름	주소	이름	주소	권리의종류 및내용	
5	남원읍 남원리	194-7	194-21	임				52	m <sup>2</sup>						
						동백나무	40년생	1	주						
						나한송	5년생	1	주						
						석류나무	5년생	1	주	이상길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7121-14				
						아로니아나무	5년생	6	주						
						하귤나무	20년생	1	주						
						하귤나무	7년생	1	주						
						아보카도나무	5년생	1	주						
						소철	3년생	1	주						
						꽃나무	5년생	3	주						
						철쭉	5년생	2	주						
						복분자나무	5년생	1	주						
						감귤나무	5년생	2	주						
						매실나무	5년생	1	주						
						자두나무	5년생	1	주						
						체리나무	5년생	1	주						
						배나무	5년생	1	주						
						감나무	5년생	1	주						
						매실나무	7년생	1	주						

도보 제700호 2018년 01월 24일(수요일)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대 장 (당초)	지장물내역		분할 면적및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대장 (당초)	분할 (편입)			종류	구조			이름	주소	이름	주소	권리의종류 및내용	
						금굴나무	30년생	1	주						
						블루베리나무	5년생	1	주						
						멀구슬나무	40년생	1	주						
						먼나무	7년생	1	주						
						황칠나무	5년생	1	주						
6	남원읍 남원리	194-8	194-23	대				214	m <sup>2</sup>						
						감굴나무	30년생	26	주						
						감굴나무	7년생	3	주						
						감굴나무	3년생	1	주	정봉홍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7121-10				
						하굴나무	40년생	1	주						
						샤스레파나무	10년생	1	주						
						팽나무	25년생	1	주						
						다정큼나무	10년생	1	주						
						주목	25년생	1	주						
						개나리	20년생	5	주						
						동백나무	30년생	4	주						
						바닥포장	콘크리트	1	식						
7	남원읍 남원리	194-2	194-9	도				127	m <sup>2</sup>						